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687 취득세 등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5.
판 결 선 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가산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한 각 가산세 합계 28,710,550원([redacted]변전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련) 및 37,774,390원([redacted]변전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3.경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에서 [redacted]변전소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후 2013. 8. 20. 피고로부터 변전소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사용승인일을 변전소 건물의 취득일로 보아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 10. 17.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위 각 세목을 합쳐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로 합계 117,392,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1.경 [redacted]시 [redacted]동 [redacted]에서 [redacted]변전소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후 2014. 5. 7. 피고로부터 변전소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사용승인일을 변전소 건물의 취득일로 보아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2014. 6. 24. 취득세 등 합계 130,612,1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redacted]변전소 건물의 사실상 사용일이 변압기 및 차단기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마친 2012. 5. 10.이고, [redacted]변전소 건물의 사실상 사용일이 인근에 있는 대륜발전소로 계통병입된 2013. 12. 4.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원고가 위 각 일자에 각 변전소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가산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은 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 명목의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변압기 등 변전설비가 아닌 변전소 건물만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고, 변전소 건물은 변전설비와 별개의 물건에 해당하므로, 변압기 및 차단기의 사용전 검사일([redacted]변전소)이나 계통병입일([redacted]변전소)에 각 변전소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각 변전소 건물의 사실상 사용일은 각 건축공정이 완료되고 변전설비에 의한 전력공급이 시작된 '상업운전일'이다.

2) 제1예비적 주장

피고가 각 변전소 건물의 취득시기를 각각 2012. 5. 10.과 2013. 12. 4.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가액은 각 건물의 사용승인이 있었던 2013. 8. 20.과 2014. 5. 7.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어긋나 위법하다.

3) 제2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각 변전소 건물의 취득시기가 관계 법령의 해석상 타당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법령 해석이 실무 또는 판례상 확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바(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규정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용일'은 과세요건이므로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건축물을 당초 건축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의 공정률은 물론 필수시설의 설치 여부, 상업시설의 경우 대가의 징수 여부, 시설 근무자가 필요한 경우 근무자의 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변전소 건물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밖으로부터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작업행위)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하는 데 있으므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변압기와 차단기 등 변전설비를 설치 및 가동하였는지, 인근 수용가인 [redacted]시 [redacted]면 일대 또는 [redacted]택지지구에 전력공급을 시작하였는지, 근무 인력이 배치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일반적으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신뢰성운전 시험이 완료된 후 계통부하망과 연계하여 상업목적을 위해 종래 제작 목적에 맞게 발전설비를 운전하는 '상업운전' 시점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봄이 상당하다.

2)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신축중이던 [redacted]변전소 건물에 변압기와 저압·고압 차단기를 각 설치한 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2012. 5. 10. [redacted]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고 합격한 사실, 원고가 신축중이던 [redacted]변전소 건물에 고압 차단기를 설치한 후 전기사업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2013. 9. 17. [redacted]공사로부터 임시사용을 허락받고, 그 후 2013. 12. 3. 대륜발전소로 계통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입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 법령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7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다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계 법령상 변압기와 차단기 등 변전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피고도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인 변전소 건물의 사실상 사용일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변전설비의 시험가동 또는 사용전 검사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유기적 일체로서의 변전소가 실제 가동을 시작해 그 기능을 언제부터 수행하였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2012. 5. 10.과 2013. 12. 4.에는 각 변전소의 외벽공사 등이 진행중이었으며, [redacted] 변전소는 2013. 1. 11., [redacted]변전소는 2014. 3. 24.에야 비로소 모든 공사가 완료된 점, ③ [redacted]변전소의 경우 2013. 12. 4. 대륜발전소로의 계통병입이 이루어졌지만 당시에는 변압기나 저압 차단기 등 변전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던 상태여서 변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점, ④ 2012. 5. 10.과 2013. 12. 4.에는 각 변전소의 인근 수용가인 [redacted]시 [redacted] 일대 또는 [redacted]택지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상업운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2. 5. 10. [redacted]변전소 건물을, 2013. 12. 4. [redacted]변전소 건물을 각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김종신

판사 현영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가산세 부과내역

구분	부과처분 일자	세목			
		가산세 합계	취득세 가산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농특세 가산세
[redacted]변전소	2016. 1. 4.	**28,710,550원**	28,076,670원	281,730	352,150원
[redacted]변전소	2016. 1. 4.	**37,774,390원**	35,314,350원	1,423,470	1,036,470원
합계		66,484,940원	63,391,020원	1,705,300	1,388,620원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 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전력거래소, 2013. 10. 2. 시행)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6. '계통병입'이라 함은 발전기가 기동하여 무부하 정격속도에서 동기 검정장치에 의하여 전력계통에 병렬로 운전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8

참고자료

[전력거래소의 발전기등록 업무처리절차]

